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-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역주민들의 권익·복리 증진,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적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 및 출자금 변경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【감면조례 신설】

현행	개정안
(신설)	제13조의2(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)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4. 기타 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6. 12. 8. ~ 12. 28 (제출된 의견 없음)
- 나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다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: 원안 동의
- 마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【법무팀 의견】

- ▶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구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 및 공익을 해치는 요소가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)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시한)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하는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제13조의2(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)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.</p>